

2016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6. 3. 11. (금요일), 14:00~16:4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최성자, 김영운, 김해숙, 미등, 박상미,
박영규, 서영대, 전경옥, 전용일, 채금석,
허영일 (이상 11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 | | | |
|---|----------------------------|-------|
| 1 |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은산별신제’ 보유자 인정 | (공 개) |
|---|----------------------------|-------|

【검토사항】

- | | | |
|---|--|--------|
| 1 |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 인정 검토 | (비 공개) |
| 2 |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검토 | (비 공개) |
| 3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인정 및 전수교육조교 선정 대상
종목의 조사자 검토 및 추천 | (비 공개) |

심의사항

안건번호 무형2016-02-001

1.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은산별신제’ 보유자 인정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은산별신제’ 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7차 회의(‘15.12.18.)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은산별신제’ 보유자로 송병일을 인정 예고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15.12.29.~)하고, 보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은산별신제’
- 지정일 : 1966.2.15.
- 전승자 현황
 - 보유자(1명) : 박창규(‘32년생, 남/화주, ‘98.6.5. 인정)
 - 전수교육조교(4명) : 송병일(남/화주, ‘85.7.1. 선정)
서기성(남/상쇠, ‘01.6.27. 선정)
이일구(여/무녀, ‘01.6.27. 선정)
조복만(남/지화제작, ‘07.3.12. 선정)

2) 추진경과

- 2015년도 전승자 총원조사 기본계획에 포함(‘15.1월)
- 해당 보존회에서 보유자 인정 관련 자료보고서 제출(‘15.1월)
- 조사자 사전회의 실시(‘15.10.29.) 및 현지조사 실시(‘15.11.9.)
- 2015년 제7차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심의(‘15.12.18.)

- 송병일을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은산별신제’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3) 보유자 인정조사

- 조사자 : 관계전문가 5명
- 조사대상자 : 송병일, 서○○, 이○○, 조○○
-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단체종목)

4) 예고사항(관보 제18668호/ 2015. 12. 29./문화재청공고 제2015-406호)

- 예고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9호 은산별신제	보유자 인정	송병일	남	1950.7.27.	집례 (대장·화주 ·지화제작)	충남 부여군 은산면 충절로

- 예고사유

- 송병일은 은산별신제의 전통적 의식절차의 구현 정도 및 숙련도, 해당 종목 전반의 이해 정도, 리더십과 교수능력 등 전승기량 및 역량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은산별신제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 예고결과 : 이의제기 없음.

라. 검토의견 : 송병일의 ‘은산별신제’ 보유자 인정 여부

마. 의결사항

- 가결함.
 - 송병일을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은산별신제’ 보유자로 인정함.
 - 해당 기·예능은 ‘대장·화주·지화제작’으로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6-02-002

1.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 인정 검토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2.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검토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인정 및 전수교육조교 선정 대상 종목의 조사자 검토 및 추천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